

제2867호
2021. 9.30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 편집인 : 홍보 전 산 과 장 김 영 혜
 전화 : 3396-4951
 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고 시

제2021-116호 :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(선제검사) 행정명령 2

● 공 고

제2021-720호 : 2021. 6. 1.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4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
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1 / FAX.(02)3396-9022/3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	

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-116호

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
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(선제검사) 행정명령

서울특별시 중구 내 코로나-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

2021년 9월 30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적용지역 : 서울특별시 중구 전 지역
2. 검사기간 : '21. 10. 1.(금) ~ '21. 10. 17.(일), (17일간)
3. 처분대상 : 서울특별시 중구 내 건설공사장 종사자
 - ※ 종사자라 함은 사무직 및 일용직 근로자,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 등 모두 포함함
 - ※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원 검사
4. 처분내용 :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건설공사장의 모든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(선제검사)을 받을 것
 - ※ 단, '21. 9. 18(토) ~ 9. 30(목) 기간 중 건강진단(선제검사) 받은 경우 본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함
5. 처분사유 :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장에 대한 긴급조치 필요
6.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3호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4까지 및 제12호의 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

- 3. 건강진단,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

7. 효력발생 시점 : 고시 즉시 효력 발생

8. 검사장소 : 건설공사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, 임시선별검사소, 찾아가는 선별검사소

9. 검사비 : 무료

10. 위반에 따른 벌칙 등

- 본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 처분의 위반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, 이후 발생하는 방역 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11. 불복절차 등

- 본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※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 사전통지 생략

12. 문의처 : 서울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재난총괄팀(☎02-3396-4472)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-720호

2021. 6. 1.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
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2021. 6. 1.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1년 9월 30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개별주택가격 공시

가. 공시(가격)기준일 : 2021. 6. 1.기준

나. 개별주택수 : 27호

다. 공시사항 : 개별주택의 소재지, 면적, 가격등

라. 열람방법 및 장소 : 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,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(<http://kras.seoul.go.kr>)

2. 이의신청방법

가. 2021. 6. 1.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구청 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음.

나. 이의신청은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16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이의 신청서(중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, 세무1과,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)에 작성하여 우편·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야 함.

(별지 제1호)

국토교통부공고제2021-1436호

2021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

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1년 9월 30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2021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

가. 공시(가격) 기준일 : 2021년 6월 1일

나. 공동주택수 : 131,839호 (아파트 109,237호, 연립 4,666호, 다세대 17,936호)

다. 공시사항 : 공동주택의 소재지, 명칭, 동, 호수, 면적, 가격
(내용 생략,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·군·구에서 열람)

라. 열람방법 및 장소 :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(www.realtyprice.kr),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업
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(또는 읍·면·동) 민원실

2. 이의신청방법

가. 2021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(www.realtyprice.kr)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(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)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.

나. 이의신청은『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』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(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(www.realtyprice.kr)에서 다운받거나, 시·군·구청(또는 읍·면·동) 민원실에 비치)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(www.realtyprice.kr)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.